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

2000. 9. 30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(2000. 9. 2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박재식)

가. 제안이유

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문의 삭제와
일부 조문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입증지 판매인 판매소 폐지신고 의무화 삭제(안 제11조2항)
- 판매소의 위치중 민원실내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
직장금고에서 위탁판매를
⇒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위탁판매(안 제12조)
-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 삭제(안 제15조)
 - 판매인의 장소 변경하였을 때와 사망하였을 때

-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아니하였거나 주소불명한 때
 - 판매인이 무능력자인 때
- 판매인 보유 수입증지증 오염, 훼손에 따른 증지교환시 그 원인 판매인의 고의·과실의 경우 교환 불가 조문 삭제(안 제2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만)

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 이는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일부조문의 정비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
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와 제26조의 증지 교환에 관한 조문을 폐지시 증지관리의 방법과
 제12조의 판매소의 위치 중 단서조항의 “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,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, 그 판매를 위탁판매 할 수 있다”라는 개정조문과
 동 조례 제7조 3항의 소속 직원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 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의 차이점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: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목중 “판매폐지” 및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중 “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”를 “소속기관 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2항중 “제10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중 “지정”을 “신고”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,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8호서식

수 입 증 지 판 매 인 명 의(위치) 변 경 신 고 서				
신 고 번 호		제 호	신고년월일	년 월 일
기 신 고 자	판매소위치		명의 위치 변경 요구 자	판매소위치
	주 소			주 소
	성 명			성 명
	주민등록번호			주민등록번호
명의(위치)변경사유				
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(위치)를 변경코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고인 주소				
성명			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	
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				

별지 제9호 서식

월	일	카드 번 호	금일까지 카드금액 (A)	전일까지 카드금액 (B)	금일 결손(C)		금일발생 (A-B-C)		결 채		
					매 수	금 액	매 수	금 액	계	담 당	과 장

※ 조성카드는 1일 1매를 원칙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1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(생략) ② 판매인이 증거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판매인의 경우, 위치변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삭제)</p>
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증거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실내에 증거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</p>	<p>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소속기관 민원실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</p>
<p>제15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자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</p> <p>1. 판매인의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 2. 판매인이 사망한 때 3.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.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</p>	<p>제15조 (삭제)</p>
<p>제20조(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)</p> <p>① (생략)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제9호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티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. 다만,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<u>지정의 취소</u>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증지의 환매) ①..... <u>신고</u></p>
<p>제26조(증지의 교환)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,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교환청구 할 수 있다. 다만,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. ③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6조 (삭제)</p>